

종자(삼수 등) 생산·판매 시 주의사항

《 종자산업법상 용어 》

- 종자(種子):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, 버섯 종균(種菌), 묘목(苗木), 포자(孢子) 또는 영양체(營養體)인 잎·줄기·뿌리 등
- 종자업: 종자를 생산·가공 또는 다시 포장(包裝)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(業)으로 하는 것

1. 종자업 등록

- 종자(삼수 등)를 생산·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시설·장비를 갖추고 종자관리사를 두어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함(종자산업법 제37조)

<종자업 등록 시 필요사항>

- 종자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(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)
 - * 예시) 화훼: 철재하우스(330㎡이상), 육종포장(3,000㎡이상), 정선기,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
- 종자관리사를 1명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)
 - * 문의: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(054-912-0165~7)

2. 품종 생산·수입 판매신고

- 종자(삼수 등)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(종자산업법 제38조)

<품종의 생산·수입 판매신고 시 필요사항>

- 품종의 생산·수입판매 신고서, 종자업 등록증 사본 1부, 종자시료, 수입적응성 시험확인서 1부(수입적응성 시험 대상작물의 경우) 등(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)
 - * 문의: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채소심사팀(054-912-0115)

3. 종자 품질표시

- 종자(삼수 등)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함(종자산업법 제43조)

- 품질표시 사항: 품종명칭, 생산년도(포장년월), 발아율, 발아보증시한, 수량, 수입연월, 수입자, 생산·수입 판매신고번호, 종자업 등록번호
 - * 삼수 판매 시 ‘발아율과 발아보증시한’은 표시 제외

4. 위반시 벌칙

-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·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,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·보관한 경우 과태료(10~1,000만원) 부과

<완제품 종자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 종자산업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.>